

しゅうがくし えん きん しん せい  
**就学支援金の申請について**

か ぜ い しょうめい しょうとう しん せい かた つうしん せい  
**(課税証明書等により申請する方) 通信制**

취학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과세증명서 등으로 신청하시는 분) 통신제

## ◆ ていしゅつ しよるい 提出する書類

◇ つぎ しよるい はいふ ふとう い ていしゅつ  
次の書類を、配付した封筒に入れて提出してください。

1 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かくにんひょう  
就学支援金確認票

2 こうとうがっこ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じゅきゅうしかくにていしんせいしよ ようしきだい こう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 (様式第1号・その2)

3 れいわがん へいせい ねんど かぜいしやうめいしやう つぎ あ  
令和元(平成31)年度の課税証明書等 (次のア～エに掲げるいずれかの書類)

ほごしや めい ふぼ とどうふけんみんぜいしよとくわり しちやうそんみんぜいしよとくわり かぜい ぼあい  
保護者2名(父母)が都道府県民税所得割と市町村民税所得割を課税されている場合は、  
ふぼ  
父母それぞれの書類が必要です。

なお、配偶者控除が確認できる場合は、配偶者の方の課税証明書等は必要ありません。

ただし、この場合でも、都道府県民税所得割と市町村民税所得割の合計額が「50万2,000  
えん いじやう ぼあい はいぐうしや かた かぜいしやうめいしやう  
円」以上の場合は、配偶者の方の課税証明書等(ア～ウ)のいずれかの書類が必要です。

ア れいわがん へいせい ねんど しちやうそんみんぜい けんみんぜいとくべつちやうしゅうぜいがくつうちしよ  
令和元(平成31)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特別徴収税額通知書のコピー

イ れいわがん へいせい ねんど しちやうそんみんぜい けんみんぜいぜいがくけつてい のうぜいつうちしよ  
令和元(平成31)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税額決定・納税通知書のコピー

ウ れいわがん へいせい ねんど しちやうそんみんぜい けんみんぜいかぜい ひかぜい しやうめいしよ げんぼんまた  
令和元(平成31)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課税(非課税)証明書の原本又はコピー

エ せいかつほ ごじゅきゅうしやうめいしよ げんぼん へいせい ねん がつ にちじてん せいかつほ ご じゅきゅう  
生活保護受給証明書の原本(平成31年1月1日時点で生活保護を受給しているこ  
かくにん  
とが確認できるもの)

4 けんりつうしんせいこうこ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こうふしんせいしよ  
県立通信制高校就学支援金交付申請書

5 こうとうがっこ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ふりこみこうぎもうしでしよ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振込口座申出書

6 ふりこみこうぎ つうちやう  
振込口座の通帳(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

7 【へいせい ねん がつ にちいこう こうこう にゅうがくご たいがく さいにゅうがく かた ) こうとうがっこうとう  
平成26年4月1日以降に高校に入学後、退学し、再入学された方のみ】高等学校等

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じゅきゅうしかくしやうめつうち  
就学支援金受給資格消滅通知

※ こじんばんごう とう ちやうふだいし ほごしや かおじゃしんつ みぶんしやうめいしよ  
「個人番号カード等のコピー貼付台紙」と「保護者の顔写真付き身分証明書のコピー」

ていしゅつ ひつやう  
を提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 ◆ ていしゅつ きげん 提出期限

れいわ ねん がつ にち  
令和2年 月 日

## ◆ 제출하는 서류

◇ 다음 서류를 배부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십시오.

- 1 취학지원금 확인표
- 2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양식 제 1 호·2)
- 3 2019 년도 과세증명서 등 (다음 ㄱ~ㄴ 중에서 어느 하나 )

보호자 두 명(부모)이 도도부현민세 소득할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배우자 공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과세증명서 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도부현민세 소득할과 시정촌민세 소득할의 합계 금액이 “50 만 2,000 엔”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과세증명서(ㄱ~ㄴ)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ㄱ 2019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 징수세액 통지서 사본

ㄴ 2019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사본

ㄷ 2019 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ㄹ 생활보호수급증명서 원본 (2019 년 1 월 1 일 시점에서 생활보호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현립 통신제고등학교 취학지원금 교부 신청서
- 5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입금 계좌 신고서
- 6 입금 계좌의 통장(또는 현금 카드) 사본
- 7 【2014 년 4 월 1 일 이후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하고 재입학한 분만】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소멸 통지

※ “개인번호카드 등의 사본 첨부 대지(용지)”와 “보호자의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제출 기한

2020 년 월 일

## ◆ 就学支援金確認票の記載について

- ◇ 確認事項2の「 その他 ( )」に、「課税証明書等●名分」と記載してください。

**確認事項2**

提出書類をご確認ください。

**【提出書類(申請しない場合)】**

就学支援金確認票 (本用紙)  
記入はここまでです。  
確認事項3以降は、記入不要です。

**【提出書類(申請する場合)】**

- 就学支援金確認票 (本用紙)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
- 個人番号カード等のコピー貼付台紙
- 保護者の顔写真付き身分証明書のコピー  
※ 生徒本人が提出書類一式を直接提出する場合、身分証明書のコピーは不要です。
- 県立通信制高校就学支援金交付申請書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振込口座申出書
- 振込口座の通帳 (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 のコピー
- 【生活保護受給世帯の方のみ】生活保護受給証明書の原本
- 【平成26年4月1日以降に高校に入学後、退学し、再入学された方のみ】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消滅通知
- その他 ( **課税証明書等2名分** )

## ◆ 今後の手続き

- ◇ 就学支援金の対象となった方 (受給資格が認定された方) もならなかった方 (受給資格が不認定となった方) も、下記の図にある、毎年7月の手続きが必要 (2回目～5回目) になります。
- ◇ 毎年7月に課税証明書等をご用意いただき、別途お知らせする提出期限までに、学校に申請をしていただく必要があります。
- ◇ 提出期限までに提出がなかった場合は、就学支援金の対象であっても、受給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 ◆ 취학지원금 확인표 기재에 대하여

- ◇ 확인 사항 2의 “□ 기타( )”에 “과세증명서 등 ● 명분”으로 기재하십시오.

**確認事項2**

提出書類をご確認ください。

【提出書類(申請しない場合)】  
□ 就学支援金確認票 (本用紙)  
記入はここまでです。  
確認事項3以降は、記入不要です。

【提出書類(申請する場合)】

- 就学支援金確認票 (本用紙)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
- 個人番号カード等のコピー貼付台紙
- 保護者の顔写真付き身分証明書のコピー  
※ 生徒本人が提出書類一式を直接提出する場合、身分証明書のコピーは不要です。
- 県立通信制高校就学支援金交付申請書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振込口座申出書
- 振込口座の通帳 (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 のコピー
- 【生活保護受給世帯の方のみ】生活保護受給証明書の原本
- 【平成26年4月1日以降に高校に入学後、退学し、再入学された方のみ】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消滅通知
- その他 ( 課税証明書等2名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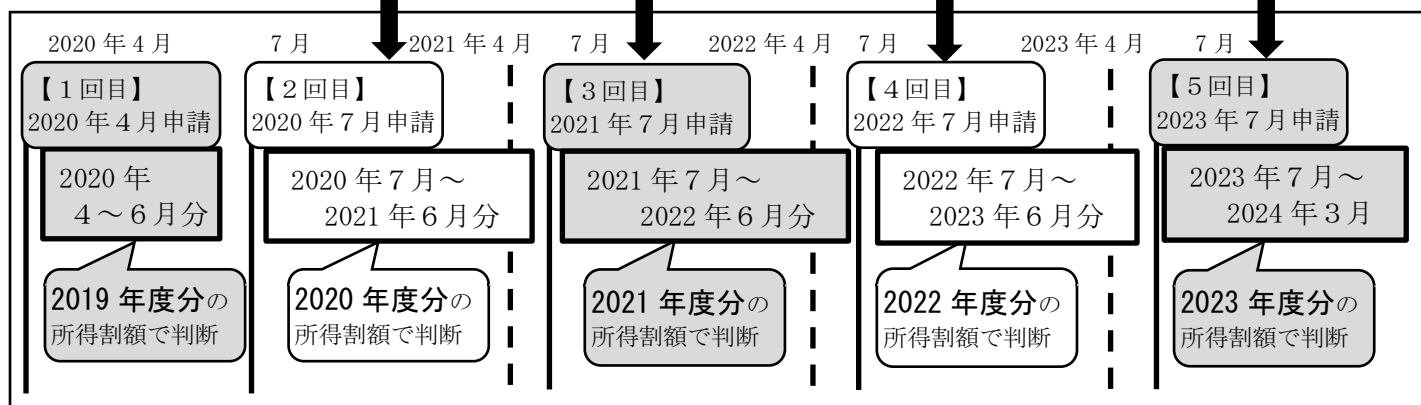
## ◆ 이후의 절차

- ◇ 취학지원금 대상이 된 분(수급 자격이 인정된 분)도 대상이 아닌 분(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분)도 아래 그림에 있는 매년 7월의 절차가 필요(2 ~ 5 회제)합니다.
- ◇ 매년 7 월에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별도 통지하는 제출 기한까지 학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학지원금 대상이어도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さんこう こじんばんごう しよるい ていしゅつ  
【参考：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がわかる書類を提出すると・・・】

- 就学支援金の対象となった方（受給資格が認定された方）は、ご家庭の事情が変わらない限り、毎年7月の手続きが不要（2回目～5回目）となります。
- 県教育委員会が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を使って所得割額の確認を行い、対象であるかどうかを審査するので、手続きの手間、手続き忘れがなくなります。
- 就学支援金の対象とならなかった方（受給資格が不認定となった方）は、ご家庭の事情が変わらない限り、次の手続きは申請書の提出のみとなります。
- 県教育委員会が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を使って所得割額の確認を行い、対象であるかどうかを審査するので、課税証明書等をご用意いただく必要がなくなり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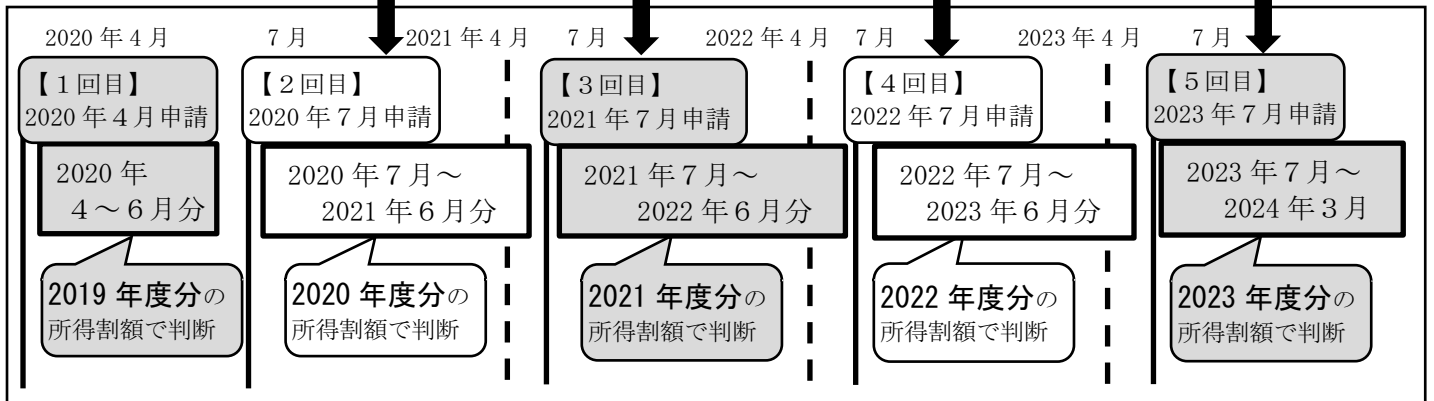
個人番号（マイナンバー）がわかる書類を提出している方で、  
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た方は、2回目から5回目までの申請は必要がなくなります。



**【참고 :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 취학지원금 대상이 된 분(수급 자격이 인정된 분)은 가정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매년 7월의 절차가 필요 없어(2 ~ 5 회째)입니다.
- 현교육위원회가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사용해 소득할액을 확인하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므로 수속의 번거로움이나 잊어 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 취학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은 분(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분)은 가정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다음 번 절차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현교육위원회가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사용해 소득할액을 확인하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므로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번호(마이넘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분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분은 2 회째부터 5 회째까지의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의 "기입 예"

様式第1号 (その2) (第3条第1項並びに第10条第2項及び第11条第1項から第3項まで関係)

## 굵은 선 테두리 안을 기입

2020年 4月 1日

4월 1일로 기입

神奈川県教育委員会 殿

こうとうがっこうと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じゅく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しんせいのしよ  
受給資格認定申請書 (初回時)

こうとうがっこうと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 い か 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以下「就学支援金」といいます。) 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첫 회째)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하 "취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2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収入状況届出書 (2回目以降)

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届け出ます。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취학지원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는,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명과 '후리가나'를 기입  
·학생 본인이 기입  
·보호자에 의한 대필도 가능

이 하의 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記入に当たっては、別紙の「記入上の注意」及び「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

ふりがな	ぼんごう		こたろう	
せいと 生徒の氏名	姓	番号	名	子太郎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오.

せいと せいねんがっぴ  
生徒の生年月日 昭和・平成 16 年 8 月 15 日

せいと じゅうしょ  
生徒の住所 〒 231-0021  
神奈川県 横浜市 中区日本大通り1000

학생의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ほごしやとう れんらくき  
保護者等の連絡先 父090-0000-0000 母080-0000-0000

주간에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하십시오.

せいと ざいがく  
生徒が在学する 학교의名称 神奈川県立○○○○○学校

【1. 高等学校等の在学期間について】 (収入状況届出書の場合は記入不要です。)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등(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정시제·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입학하는 학교명과 과정을 기입하십시오.  
高等学校(全日制)  
高等学校(定時制)  
高等学校(通信制)  
中等教育学校(後期課程)

げんざい がっこう ①現在の学校の在学期間	学校名 神奈川県立 ○○○○○学校	年 月 日 ~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学科 高等学校 (○○制)
かこ がっこう ②過去の学校の在学期間	学校名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学科

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

뒷면도 기입해 주십시오.



ほごしゃとう しゅうにゆう じょうきょう  
【2. 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ついて】

【2.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レ표를 하십시오.

(1) 취학지원금 지급 시기의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6월 (前年度の課税証明書等を添付)	<input type="checkbox"/> 7월~翌年6월 (今年度の課税証明書等を添付)
---	--

(2) 申請又は届出時点における保護者等の状況 及び添付する課税証明書等については次のとおりです。

4월 1일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다음의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권자(부모) 2명분	
②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1명분	(親権者が、一時的に親権を行う児童福祉施設長、又は、④から⑦までのいずれかの□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친권자의 1 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 도부현민세 소득할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었다고 해도, 소득 제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친권자의 1 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도부현민세 소득할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 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친권자 중 한명의 과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등	
③	<input type="checkbox"/>	미성년 후견인 □명 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단,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합니다.)	
④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주된 생계 유지자) 1명 분 ·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성인이 되었지만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⑤	<input type="checkbox"/>	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 성인이 된 경우 · 미성년이지만 도부현민세 소득할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	

①~⑦ 중에서 하나의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

(2)-2 다음 이유로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⑥	<input type="checkbox"/>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미성년이고 도부현민세 소득할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⑦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도부현민세 소득할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⑥ 또는 ⑦에 레표를 한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氏名	生徒との続柄	氏名	生徒との続柄
番号 太郎	父	番号 花子	母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분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  
를 기입하십시오.

※ 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의 개정 결정에 의한 도부현민세 소득할액 또는 시정촌민세 소득할액의 변경이나 이혼·사별, 양자 결연 등에 의해 보호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로 연락해 주십시오.

かくにんじょう 【3. 確認事項】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レ표를 하십시오.

学校受付日 年 月 日 (学校において記入)